

#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심 사 보 고 서

2001년 6월 28일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 1. 회 부

가.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

## 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6월 4일,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1년 6월 20일

다. 상정일자 : 제86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○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01.6.21) : 상정·의결

## 3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재무과장 신영선)

가. 제안이유

○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,265,030천원으로서 이중 10건에 567,857천원을 지출하였으며, 지출내역은

- 환경미화원 퇴직금 86,112천원
- 구제역발생 긴급 방역비 39,775천원
- 산불방지 주민홍보용 앰프설치 56,785천원
- 도민체전 출전선수 사망에 따른 보상금 5,000천원
- 봉평면 청사 건물 안전진단 용역 6,600천원
- 간이상수도 긴급수해복구 30,000천원

- 긴급 수해복구 103,821천원
- 명예퇴직수당(2건) 239,764천원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2억 6,503만원으로 이중 **10건에 5억 6,785만원**을 지출하였으며,

주요내용은 긴급수해복구 1억 382만원, 산불방지 주민홍보용 앰프 설치 5,678만원, 구제역발생 긴급방역비 3,977만원, 간이상수도 긴급수해복구 3,000만원, 기타 명예퇴직 수당임.

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**산불방지 주민홍보용 앰프설치**는 사전 예측이 가능함에도 지출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산불방지 주민홍보용 앰프설치와 봉평면 청사 건물 안전진단 용역비 지출부분에 대하여?	○ 홍보앰프는 사전 편성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못하였으며, 봉평면 청사는 갑자기 클랙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는 부분임.
○ 도민체전 유족 보상금에 대하여?	○ 2000년도 도민체전 출전했던 신상준선수가 귀가도중 해수욕장에 파도에 휩싸여 사망한 것으로 도의적인 유족보상금임.

## 6. 토 론 요 지

《 없 음 》

## 7. 심 사 결 과

○ 원안가결

## 8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예비비지출에 있어 사전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후 사업을 집행하여야 함.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가. 건의사항 : 없 음

나. 기타 특별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조서 1부 . 끝 .

#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

의안 번호	21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6. 4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,265,030천원으로서  
이중 10건에 567,857천원을 지출하였으며, 지출내역은

○ 환경미화원 퇴직금	86,112천원
○ 구제역 발생 긴급 방역비(2건)	39,775천원
○ 산불방지 주민홍보용 앰프설치	56,785천원
○ 도민체전출전선수 사망에 따른 보상금	5,000천원
○ 봉평면청사 건물 안전진단 용역	6,600천원
○ 간이상수도 긴급수해복구	30,000천원
○ 긴급 수해복구	103,821천원
○ 명예퇴직수당(2건)	239,764천원임.

## 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20조
-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

# 관계법령 발췌서

## □ 지방자치법 제120조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□ 지방재정법 제34조(예비비)

-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(예비비사용의 제한)

- 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 및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.

#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조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		사 업 명	지 출 결 정 액	지출원인 행 위 액	지출액	이월 액	불용액	처리일자		예비비지출사유
과 목									지출결 정일자	지 출 일 자	
세 항	세세항	목									
합 계				595,374	567,857	567,857	-	27,517			
폐기물관리	인건비	101-04	환경미화원 퇴직금	86,112	86,112	86,112		-	1. 12	1. 13	정부구조조정에 따른 환경미화원 퇴직금
축산행정	경상적경비	201	구제역 방제사업	3,000	2,425	2,425		575	4. 8	5. 12	가축구제역 발생에 따른 수용비 및 약품 구입비 지원
		206-01		20,152	20,152	20,152		-	4. 8	5. 12	
산림보호	자체사업	405-01	산불방지 앰프설치	60,876	56,785	56,785		4,091	4. 15	5. 9	산불사전예방 홍보용 마을앰프구입 지원
축산행정	경상적경비	201	구제역 방제사업	8,000	6,400	6,400		1,600	4. 15	8. 18	가축구제역 발생에 따른 수용비 및 약품구입비 지원
		206-01		11,340	8,588	8,588		2,752	4. 15	8. 18	
		301-09		2,880	2,210	2,210		670	4. 15	8. 18	

구 분			사 업 명	지 출 결 정 액	지출원인 행 위 액	지출액	이월 액	불용액	처리일자		예비비지출사유
과 목		목							지출결정일자	지출일자	
세 항	세세항										
체육진흥	경상적경비	301-10	유족보상금	5,000	5,000	5,000	-	6. 23	7. 19	제35회 강원도민체 전출전선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	
재산관리	자체사업	401-01	건물구조안전진단	14,000	6,600	6,600	7,400	7. 6	9. 29	봉평면청사 노후및 균열에 따른 건물구 조 안전진단	
상하수도	자체사업	401-01	간이상수도 수해복 구	30,000	30,000	30,000	-	8. 1	8. 28	집중호우로 인한 간 이상수도 수해복구	
재난관리	자체사업	401-01	긴급 수해복구	114,250	103,821	103,821	10,429	8. 8	8. 16	집중호우로 인한 긴 급 수해복구	
인사관리	인건비	101-02	명예퇴직수당	10,774	10,774	10,774	-	10.17	10.27	명예퇴직수당 부족 분 지급	
인사관리	인건비	101-02	명예퇴직수당	228,990	228,990	228,990	-	12.26	12.29	명예퇴직수당 부족 분 지급	